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 선거 지침

1. 목적

-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 선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함.

2. 기본방향

- 대의원 선출구별로 지역축협과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 선거에 관한 업무를 전담·추진
- ※ 협회의 하부조직(지부)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축협이 주도적으로 추진요망

3. 주요선거일정

- 선거 공고 : 2005. 9. 22(목)
 - 공고방법 : 신문(전문지) 및 게시 공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대의원 후보자 등록 :

2005. 9. 23~10. 4(10일간)

- 추가 등록기간 :

2005. 10. 5~2005.10.7(3일간)

- 지역별 투표일정

대상지역	일시
전북, 충북	2005. 10. 24(월)
충남, 강원	2005. 10. 25(화)
경기, 경북	2005. 10. 26(수)
전남, 경남	2005. 10. 27(목)
제주	2005. 10. 28(금)

4. 추진방법

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설치단위 : 선출구별로 설치
 - 선출구 : 76개구(「붙임 1」 참조)
 - 선출인원 : 150명
- 설치시기 : 2005. 9. 9일까지
- 구성인원 : 3명 이내
 - 위원은 선출구별 주관조합의 조합장과 대한양계협회 및 한국계육협회 지부장

본인(또는 추천하는 자)

-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상호 협의하여 선정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

□ 역할

-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각종 투표표 업무 총괄
-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소·개표소 설치 및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물 비치
-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비용정산

□ 기타

-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속된 단체의 단체장 선거시 사용하는 직인을 그대로 사용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완료 보고 (FAX로 보고)

- 보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위원장 : (사)한국계육협회장 한형석
 · 연락처 : 031-707-5722
 (FAX 031-707-5725)

- 보고기한 : 2005. 9. 9일한
 - 보고양식 : 「붙임 2」 참조
 ※축산지원부 병행 보고

나. 선거공고 및 선거인 명부 열람

□ 선거공고

- 공고일자 : 2005. 9. 22(목)
- 공고방법 : 신문 및 게시 공고 병행 실시
 - 신문공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전문지를 통해 공고

- 게시공고 :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협과 대한양계협회 및 한국계육협회의 지부 게시판에 공고(홈페이지 포함)
 - 선거공고(안) : 「붙임 3」 참조

□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비치 : 선출구별로 투표소가 설치될 사무소에 비치
- 선거인명부 열람
 - 대상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및 선출구내 육계사육농가
 - 지역별 열람기간(단, 공휴일, 토·일요일은 제외)

구분	열람기간
전북, 충북	2005. 9. 22 ~ 2005. 10. 21
충남, 강원	2005. 9. 22 ~ 2005. 10. 24
경기, 경북	2005. 9. 22 ~ 2005. 10. 25
전남, 경남	2005. 9. 22 ~ 2005. 10. 26
제주	2005. 9. 22 ~ 2005. 10. 27

- 열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인명부 수정 및 추가 신청
 - 신청대상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선거인
 - 지역별 신청기간

구분	선거인 명부 수정 및 추가 신청기간
전북, 충북	2005. 9. 22 ~ 2005. 10. 21
충남, 강원	2005. 9. 22 ~ 2005. 10. 21
경기, 경북	2005. 9. 22 ~ 2005. 10. 21
전남, 경남	2005. 9. 22 ~ 2005. 10. 24
제주	2005. 9. 22 ~ 2005. 10. 25

- 신청처 : 해당 선출구의 선거관리위원장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인 준비서류 : 2005. 6. 30일 현재 시장, 군수가 발행한 가족사육확인서
- 선거인명부 수정 : 선거관리위원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되, 사육두수는 수정 불가
- 선거인명부 수정 및 추가내역보고(FAX로 보고)
- 보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FAX 031-707-5725)
- 보고기한

구분	선거인 명부 수정 및 추가 내역
전북, 충북	2005. 10. 22
충남, 강원	2005. 10. 22
경기, 경북	2005. 10. 22
전남, 경남	2005. 10. 25
제주	2005. 10. 26

- 보고양식 : 「붙임 4」 참조
- ※ 축산지원부 병행 보고(FAX 02-2080-6560 또는 아리오피스-개인우편)

다. 후보자 등록

- 후보자 자격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에 의해 육용계 부문 축산업자 및 사육두수 조사결과에 의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

업장을 둔 자

- 등록기간 : 2005. 9. 23~10. 4(10일간)
- 단,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보다 적을 경우 등록기간을 2005. 10. 7(3일간)일까지 연장
-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축협 및 협회 게시판에 공고
- 등록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등록장소 : 선출구별로 투표소가 설치될 사무소
- 등록절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까지 본인이 직접 등록창구에 신청
 - 신청서양식 : 「붙임 5」 참조
 - 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며,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
 - 등록부 양식 : 「붙임 6」 참조
 - 접수증 양식 : 「붙임 7」 참조
- 후보자 기호결정
 - 기호결정 일자 : 2005. 10. 5(등록기한 연장시 2005. 10. 8)
 - 기호결정 방법 : 후보자 참여하에 추첨에 의해 결정
 - 불참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첨
 -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순으로 부여

- 기호가 정해진 후에 후보자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은 말소하지 아니함.

○ 후보자 기호추첨 결과를 추첨조서에 기록, 날인하여 보관

- 추첨조서 양식 : 「붙임 8」 참조

□ 후보자 서약서 제출

○ 대의원 입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 : 서약서 양식 「붙임 9」 참조

□ 후보자 등록공고

○ 공고일자 : 2005. 10. 5

○ 공고장소 : 조합 및 양 협회 지부 게시판

○ 공고양식 : 「붙임 10」 참조

□ 후보자 등록결과 보고

○ 보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FAX 031-707-5725)

○ 보고기한 : 2005. 10. 5

(등록기한 연장시 2005. 10. 8)

○ 보고양식 : 후보자 등록공고 양식으로

보고

※ 축산지원부 병행 보고

○ 선거공보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선거일시 및 장소, 선출구별 대의원 수, 투표절차,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거공보 게시

○ 지역축협 및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의 지부 게시판에 게시

□ 선거공보 발송

○ 발송대상 :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 발송기한 : 2005. 10. 7일한

마. 투개표 방법

□ 지역별 투표일자

□ 투표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상	지역일자
전북, 충북	2005. 10. 24 (월)
충남, 강원	2005. 10. 25 (화)
경기, 경북	2005. 10. 26 (수)
전남, 경남	2005. 10. 27 (목)
제주	2005. 10. 28 (금)

라. 선거공보 제작·게시·발송

□ 선거공보 제작방법

○ 대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공보 제작 : 「붙임 11」 참조

○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으로 게재

□ 투표방법 : 직접비밀투표

□ 투표소 설치 : 선출구별로 지역축협 사무실 중 투표 및 선거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

○ 투표소는 1개의 선출구에 1개로 하되, 인접 시·군이 병합된 선출구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설치 가능

- 투표준비 :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인주,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준비
-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됨.
- 투표용지 제작 및 관리
 - 투표용지는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 : 「붙임 12」 참조
 -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1, 2, 3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음.
 - 투표용지의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사용(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직인은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 조제, 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
- 투표소 출입제한 :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투표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
- 참관인은 투표소별로 주관조합의 조합장과 양 협회의 지부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선출구별 사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장)이 겸임 가능
-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
- 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함.
- 투표 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 ※후보자는 투표, 개표를 참관할 수 없음.
- 투표절차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명부(성명, 주소 등)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조치
 - 다만, 선거인 확인이 불분명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사인을 날인하고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
-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선출할 대의원수 이내에서 각각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투입
-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참여하에 투표함을 봉인하고 잔여 투표용지, 번호지, 기타 투표관계 서류와 함께 개표소로 송부

- 유효투표수 충족여부 확인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즉시 선거인명부에 의거 유효투표수의 충족여부를 확인
 - 유효투표수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서 사육하는 육계 마리수의 3분의 2이상을 사육하는 육계농가가 투표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선출구의 유효투표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선거관리위원장은 유효투표수가 미달되었을 경우에도 투표함을 봉인된 상태로 보관
- 개표방법
 - 개표주관 : 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참관 :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선거관리위원장이 미리 관람을 허용한 관람인
 - 개표절차
 -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하여 개표
 -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날인
 - 유효투표수를 충족하지 못한 선출구에서는 개표하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그대로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날인
 -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 보고 : 보고양식 「붙임 13」 참조

- 무효투표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함.
 - 선출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상에 “⊗” 표를 한 경우
 -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함.
 -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 동일 후보자란에만 “⊗” 표를 두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 표로 처리)
 -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선출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 표를 한 경우

□ 투표효력 이외에 대한 결정

- 투표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정 기준에 의하여 판단 결정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보고

바.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 당선인 결정방법

- 유효투표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수까지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단, 다수득표자 중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수보다 후보자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유효투표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득표를 획득한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유효투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인을 결정하지 아니함.

□ 당선인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조합과 양 협회의 게시판에 공고 : 「붙임 14」 참조

□ 재선거

- 당선인이 임기개시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선출구에 한하여 재선거 실시(단, 대의원 정수의

3/4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함)

- 선거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때
- 당선인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임이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 재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본 선거절차를 준용하여 실시

사. 선거비용 지원 및 기록보존

□ 선거비용 지원 및 정산

-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
- 지원한도 : 선출구당 300천원
- 자금용도 :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제작비용, 위원교통비 지급, 기타 운영비용 등
- 선거비용 신청 : 선거종료 후 1개월 이내
 -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선 집행
 -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가 종료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지급 요청
 - 신청서 : 「붙임 15」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
- 기록보존 : 선거관리위원회장은 투표용지 등 관련서류를 1년 이상 보존 C

「붙임」 자료는 계속철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 참조